의안	번호	제	ই
의	결	2024.	
연 월	일	(제	회)

의 결 사 항

군 인 사 법 일 부 개 정 법 률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〇〇〇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1. 개정이유

가사에 대한 걱정없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 간호가 필요한 경우 외에도 돌봄·봉양이 필요한 경우까지 가사휴 직 사유를 확대하고, 군 내 성비위 근절을 위하여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가사휴직제도 개선(안 제48조제3항제5호)

현재 사고·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직계 존·비속, 배우자 등을 간호하기 위한 경우에만 가사휴직을 허용하고 있으나, 앞으로는 가족 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함 나. 성비위 징계시효 연장(안 제60조의3제1항)

군 내 성비위 근절을 위하여 성 관련 비위(성폭력, 성매매, 성희롱 등) 의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자 함

다. 환수·부과처분 미이행시 징수 근거 명확화(안 제53조의2제5항 등) 명예전역수당 환수금 등을 기한내 미납부시,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 하여 환수금을 징수하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: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5. 21. ~ 5. 31.) 예정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조부모, 부모(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), 배우자,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
제49조제3항제4호 중 "이내"를 "이내."로 하고,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.

제53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⑤ 제4항에 따라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는 기관의 장은 환수 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 게 징수를 위탁한다.

제60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"을 각각 "징계의결등"으로 한다.

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.

- 1. 징계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10년
 - 가.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금지 행위
 - 나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 - 다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 - 라.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
- 2.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, 공금의 횡령·유용(流用)인 경우: 5 년
- 3. 그 밖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: 3년
- 제62조제2항 본문 중 "본인이나 연대보증인"을 "본인"으로, "명할"을 "명할 수 있고,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(「보험업법」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)에게 보증채무의이행을 청구할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8조제3항제5호 및 제49조제3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휴직 기간 상한에 관한 적용례) 제49조제3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직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전에 종전의 제48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휴직한 기간을 포함하여 총 휴직기간을 계산한다.
- 제3조(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징계시효에 관하여는 제6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8조(휴직) ①・② (생 략)	제48조(휴직) ①・② (현행과 같
	승)
③ 임용권자는 장기복무 장교,	③
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	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
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	
우와 단기복무 중인 여군이 제4	
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	
우에는 업무수행 및 인력 운영	
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	
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. 다	
만,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	
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	
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	
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	5. 조부모, 부모(배우자의 부모
의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, 부	를 포함한다), 배우자, 자녀 또
모(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	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
다), 배우자, 자녀 또는 손자녀	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	
경우. 다만, 조부모 또는 손자	
<u>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</u>	
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	

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.

④ ~ ⑧ (생 략)

- ③ 제4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다.
- 1. ~ 3. (생략)
- 4. 제48조제3항제5호: 1년 이내 <단서 신설>
- ④ (생략)
- 제53조의2(명예전역) ① ~ ④ (생 략)
 - ⑤ 제4항에 따른 환수금을 내야 | ⑤ 제4항에 따라 명예전역수당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.

④ ~ ⑧ (현행과 같음) 제49조(휴직기간) ① · ② (생 략) 제49조(휴직기간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- (3) -----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4. -----이 네. 다만,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.
- ④ (현행과 같음)
- 제53조의2(명예전역) ① ~ ④ (현 행과 같음)
 - 을 환수하여야 하는 기관의 장 은 환수 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. 이 경우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 게 징수를 위탁한다.

⑥ (생략)

제60조의3(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) ①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[금품 및 향응 수수, 공금의 횡령·유용(流用)의 경우에는 5년]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.

⑥ (현행과 같음)

제60조의3(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)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.

1. 징계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10년

- <u>나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</u> <u>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</u> <u>따른 성폭력범죄</u>
- 다. 「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 호에 따른 아동・청소년대 상 성범죄
- 라.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 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
- 2.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, 공금의 횡령·유용(流用)인 경우: 5년
- 3. 그 밖의 징계사유에 해당하 는 경우: 3년

② 징계위원회의 구성, <u>징계 및</u> <u>징계부가금 부과 의결</u>, 그 밖에 절차상의 흠 또는 징계 정도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항고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 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났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<u>징</u>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62조(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 조 급) ① (생 략)

② 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제3항 또는제4항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제적된 경우에는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군 가산복무지원금의 전부 또는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,이를

②	<u> 징계의</u>
<u> 결등</u>	
	<u>징</u>
계의결등	
③ (현행과 같음)	
제62조(군 가산복무 지원	금의 지
급) ① (현행과 같음)	
②	
본인	
<u>명할 수 있고</u>	<u> 1, 본인</u>

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 보증인(「보험업법」에 따라 보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 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반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 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 를 포함한다)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-----.

<신 설>

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 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 다.

④ (현행과 같음)

③ (생략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연 락 처 (02) 748 - 5121